

「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8월 27일

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8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9월 5일

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사회복지국장 황 은 채

나. 제안이유

-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6·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효율적인 보훈선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 인상(안 제4조1항)
 - 당초 :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
 - 변경 : 6·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8만원 지급
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 인상(안 제4조2항)

- 당초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
- 변경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7만원 지급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6·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각각 상향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으며, 상위법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 집행기관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액의 상향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발굴 필요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